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979
----------	-----

제출년월일 : 2005년03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 이유

-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향후 민간위탁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비수기 주중에는 시설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명을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함
- 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향후 민간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신설(안 제3조의 2 신설)
-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7~8월)를 제외한 비수기 주중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은 제외)에 가동율 증대등을 위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5항 신설)

3. 근거 법령

- 산림법 (법률 제07167호 2004. 02. 09 개정)
- 산림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6호 2004. 03. 20 개정)
- 산림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01468호 2004. 03. 20 개정)
- 자연휴양림 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제7조 (산림청예규 1999. 12. 03 개정)
-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27호 (2000. 01. 12 제정)

4. 의안전문 : 복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복임

- 첨부 : 1. 기타참고자료 1 부
 2. 입법예고(사본) 1 부.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산림법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휴양림의위탁관리)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휴양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장비,기타재산을 수탁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매,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임의로 시설물을 신축.개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계약의취소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의 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계약의 취소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휴양림 시설의 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숲속의집 등의 시설사용료를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주말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을 제외한 주중에는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외규정) 위탁관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관계규정의준용)이 조례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별표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시설사용료 요금표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사용기간	요금		비고
			기준	할인	
주 차료	· 소·중형차량 (승용, 봉고차)	1대 / 1일	2,000	<u>2,000</u>	• 할인요금 적용 - 비수기의 평일, 일요일, 공휴일
	· 대형차량 (버스, 화물차)	1대 / 1일	4,000	<u>4,000</u>	
숲속의집	· 5평형(4인)	1동 / 1일	30,000	<u>25,000</u>	
	· 6평형(5인)	"	40,000	<u>30,000</u>	
	· 8평형(6인)	"	50,000	<u>40,000</u>	
	· 13평형(12인)	"	80,000	<u>60,000</u>	
	· 44평형(40인)	"	200,000	<u>150,000</u>	
야영장	· 소형	개소/1일	2,000	<u>2,000</u>	10인용텐트이하(1조)
	· 대형	개소/1일	5,000	<u>5,000</u>	
정자		개소/1일	5,000	<u>5,000</u>	
평상		개소/1일	5,000	<u>5,000</u>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u>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박달재 자연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u>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이 조례는 산림법 제32조 내지 제33조 규정에 의거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휴양림의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휴양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장비, 기타 재산을 수탁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매, 증여, 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임의로 시설물의 신축, 개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⑥ 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신설)	제3조의3(계약의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계약의 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의 취소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입장료및시설사용료의면제등) ① - ④(생략) (신설)	제6조(입장료및시설사용료의면제등) ① - ④(현재과같음) ⑤ 휴양림 시설의 가동을 중대를 위하여 숲속의 집 등의 시설사용료를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 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주말등(금요일,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를 제외한 주중에는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향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제10조의2(예외규정)위탁관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2]			제10조의3(관계규정의준용)이 조례증에서 민간위탁부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설사용요금표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별지참조”	
시설명	구 분	사용기간	요 금	비 고
주차료	.중형차량 (승용,봉고차) .대형차량 (버스,화물차)	1대/1일 1대/1일	2,000 4,000	
숲속의집	.5평형(4인) .6평형(5인) .8평형(6인) .13평형(12인) .44평형(32인)	1동/1일 “ “ “ “	30,000 40,000 50,000 80,000 200,000	
야영장	.소형 .대형	개소/1일 “	2,000 5,000	10인텐트이하 10인텐트이상
정 자		개소/1일	5,000	
평 상		개소/1일	5,000	

관계법령 발췌

산림법

(법률 제07167호 2004. 2. 9)

第32條 (休養林의 委託管理) ①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山林所有者는 休養林의 效用적인 造成 또는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人統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休養林의 造成를 위한 工事 또는 그 관리·운영에 관한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改正 1994.12.22>

(2削除 <1999.2.5>

[全文改正 1990.1.13]

第33條 (休養林의 入場料등) ①休養林의 管理·運營者는 休養林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의 徵收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96.8.8>

[全文改正 1990.1.13]

산림법 시행령

(대통령 제18316호 2004. 3. 17)

제33조 (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운영의 위탁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 1995.6.23, 1996.8.8, 1997.11.29, 1999.8.6, 2000.5.16, 2002.11.6>

1.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임업및산촌진흥促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3. 산림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중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5.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1990.7.14]

산림법 시행규칙

(농림부령 제01468호 2004. 3. 20)

제30조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 ①시행령 제33조제5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독립가·임업후계자 또는 임업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산림경영 실무경험(산림행정분야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이상인 자를 말한다. <신설 1994.4.18, 1995.8.30, 1996.12.28>

②시행령 제3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5.8.30, 1996.12.28, 1999.4.19>

1.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협약·인가등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지의 여부
2. 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④삭제 <1999.11.22>

[전문개정 1990.7.14]

제31조 (휴양림의 입장료등의 정수기준)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4.18, 2000.5.16, 2002.11.14, 2004.3.20>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
4.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정양증인 상아군경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장애인
7. 국가유공자
8.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국·공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의 세부적인 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의 조성자가 각각 정한다. <개정 1995.8.30, 1998.2.13, 1999.4.19>
[전문개정 1990.7.14]

자연휴양림 조성관리및운영요령

(공포일 1999. 12. 03)

제7조 (휴양림의 위탁기간) 규칙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천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

(조례 제427호 2000. 1. 12)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경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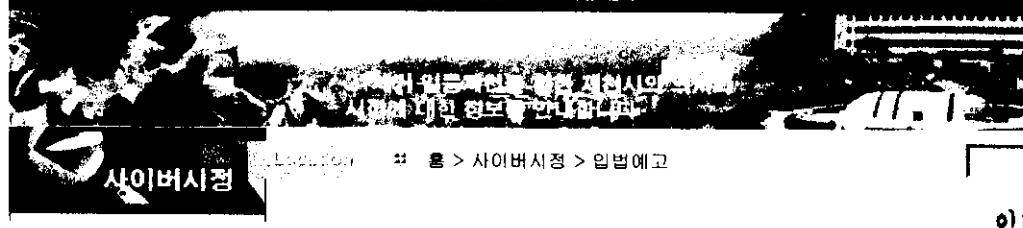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HOME](#) | [ENGLISH](#) | [CHINESE](#) | [JAI](#)
[일련번호](#) | [푸른제천](#) | [사이버시정](#) | [시민광장](#) | [전자민원창구](#) | [문화관광](#) | [산업경제](#) | [정보화](#)
[인사말](#) | [시장약력](#) | [시정일정](#) | [시장과의 대화](#) | [연설 및 강연](#) | [역대시장/군수](#)


■ 오늘의 뉴스

■ 시정영상 뉴스(VOD)

■ 공지사항

■ 보도해명

■ 입찰공고

■ 입법예고

■ 고시공고

■ 신문 스크랩

■ 푸른제천 소식지

■ 2005주요 업무계획

■ 공약추진사업

■ 시정100선

■ 재정현황

■ 2005년 예산서공개

[이동](#) > 사이버시정 > 입법예고

입
법

■ 입법예고사항

* 제천시 지방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입법예고 사항을 안

153 Date : 02 4 2005 6:23PM Hit : 373

이 률 산림녹지과

파일첨부 1 [진수조례.hwp](#) (20 KB), Download : 72

제 목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제천시 공고 제2005 - 48호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 02. 04

제 천 시 장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취지

-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신설
-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비수기 주중에는 시설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제령을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로함
- 휴양림의 관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함
(조례 제3조의2)
-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성수기(7월~8월)을 제외
한 비수기 주중(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은 제외)에
가동률 증대등을 위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사용
료를 하향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조례 제6조 제5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02월 24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652-0910, 640-5631, 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